

돼지(종돈 제외) []양도 · 양수 · 이동
 []수입 · 수출

신고서

돼지(종돈 포함) []사육 현황

※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발급일		처리기간		즉시	
공 통 신 고 사 상 항	농장	① 성명			② 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)				
	경영자	③ 법인 명칭			(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)				
	등 정보	④ 주소			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)				
	기축 사육시설	⑤ 농장식별번호							
		⑥ 사육 주소							
		⑦ 사육 개시 연월일							
		⑧ 관리자 성명			⑨ 관리자 생년월일				
		⑩ 관리자 주소			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)				
	정보	⑪ 농장유형	☐ 종돈장 ☐ AI센터 ☐ 검정소 ☐ 번식전문농장 ☐ 비육전문농장 ☐ 일괄사육농장 ☐ 기 타						

사육현황 신고	⑫ 계(두)	⑬ 종 류	⑭ 세부내역(두)						
			소계	모돈	후보돈	웅돈	자돈	육성돈	비육돈
		일반종							
		재래종							
	멧돼지								

양도·양수 이동(반입· 반출) 신고	⑮ 구분:	⑯ 이동 일자:
	☐ 양도·반출 ☐ 양수·반입	⑰ 이동 두수: 총 두
		☐ 모돈() ☐ 후보돈() ☐ 웅돈() ☐ 자돈() ☐ 육성돈() ☐ 비육돈() ※ 자돈의 임시표시(페인트 색상, 표시모양 등:)
	⑱ 경영자명:	⑲ 농장식별번호(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):
	⑳ 사육지 주소:	(전화번호:)

수입·수출 신고	㉑ 구분 : ☐ 수입 ☐ 수출	㉔ 수입·수출 두수: 총 두 ☐ 모든 () ☐ 후보돈 () ☐ 웅돈 () ☐ 자돈 () ☐ 육성돈 () ☐ 비육돈 ()
	㉒ 수입·수출 연월일 :	
	㉓ 수입·수출 원산지(국가명)	

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이
아
부

신 고 인 (서명 또는 인)
대리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대리 신고인 연락처

축산물품질평가원장

종도등록기관의 장 귀하

유의사항

- ①~⑪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, 돼지의 경영자, 관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.
- 사육현황 신고는 ⑫~⑭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.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일반종: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
*서양종: 대요크셔(Large Yorkshire), 랜드레이스(Landrace), 두록(Duroc), 햄프셔(Hampshire), 웰시(Welsh), 피어트레인(Pietrain), 스포티드(Spotted), 버크셔(Berkshire)
 - 재래종(Korean native pig):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,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 - 멧돼지: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
 - 모돈: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릿수
 - 후보돈: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릿수
 - 웅돈: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숫돼지 마릿수
 - 사. 자 돈: 2개월령 미만
 - 아. 육성돈: 2~4개월령 미만
 - 자. 비육돈: 4~6개월령 이상
- 이동신고는 ⑮란에 양도(반입)·양수(반출) 구분의 □에 √ 를 표시하고, ⑯~⑳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.
 - 이동일자: 돼지의 양도(반입)·양수(반출)일자
 - 이동 두수: 양도(반입)·양수(반출) 두수(모돈, 후보돈, 웅돈, 자돈, 육성돈, 비육돈 구분의 □에 √ 를 표시하고 두수기록)
 - 경영자명: 신고인 입장에서 이동 전·후 경영자 성명
 - 농장식별번호(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): 양도·양수·이동되는 상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(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)를 기재
 - 사육지 주소: 이동 전·후 사육지 주소
- 수입·수출신고는 ㉠~㉢란을 적습니다.
- 이 신고서는 경영자 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.
-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.